

2026. 6.

중국 실연자 재녹음을 통한 권리 회복 시도, 법정허락 적용 범위 쟁점 부각

국회입법조사처
백지연

1. 사건의 개요

2025년 6월 12일, 가수이자 실연자인 ‘덩쯔치(邓紫棋, G.E.M.)’는 재녹음 앨범 ‘I AM GLORIA’를 발매하여 ‘泡沫’, ‘睡公主’ 등 기존 곡 12곡의 재녹음 버전을 공개하였다. 이에 전 소속사이자 음반제작자인 ‘벌새음악(蜂鸟音乐)’은 같은 달 18일 공개 성명을 내고, 해당 재녹음 곡이 자사가 보유한 음반제작자 권리 및 작사·작곡 저작권에 따른 복제권, 개작권¹⁾,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음악 플랫폼에는 즉각적인 음원 삭제를, 실연자 측에는 48시간 이내 모든 유통 채널에서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였다.

실연자 측은 같은 날 즉각 반박 입장을 내어 음원 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음반제작자에 대해 2018년 10월 이후 미지급된 저작권료 및 2019년 계약 해지 직전 노무비 정산을 역으로 요구하였다.

이 분쟁은 2019년 3월 실연자가 음반제작자의 허위진술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비롯되었다. 음반제작자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체결된 계약의 효력 및 2019년 이전 모든 음악 작품에 대한 권리 보유를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2024년 1월에는 저작권 성명을 발표하여 실연자 기존 작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강조하고 무단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2. 양 당사자의 주장

1) 음반제작자 측 주장

‘벌새음악’은 2007년부터 2022년 사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실연자가 창작·실연·녹음한 모든 음악 작품 및 음반(가사·곡·녹음물 포함)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자사에 완전히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재녹음 대상 곡은 ‘天空没有极限’, ‘后会无期’, ‘喜欢你’ 3곡을 제외하면 모두 계약 기간 중 창작된 것이며, 음원 역시 같은 기간 중 발행되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및 중국 내 주요 음악 플랫폼의 등록상 권리자가 ‘벌새음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전문기관의 비교 분석 결과 재녹음 곡이 원곡과 가사 표현, 주요 선율, 음향 미학, 녹음 기술, 믹싱 구성, 효과음 활용 측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보이므로 복제권 및 개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의미함

2) 실연자 측 주장

실연자 측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체결 당시 실연자가 만 15세 미성년자였고, 직계 존속이 영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된 포괄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송권에 관하여는, 실연자가 만 14세 때부터 ‘홍콩 작곡가·작사가 협회(이하 ‘CASH’)’에 공중송신권을 위탁하여 왔으므로 해당 권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협회를 통해 분리 관리되어 왔고 음반제작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복제권 및 개작권에 관하여는 중국 「저작권법」 제42조의 법정허락 규정²⁾에 근거하여, 적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재녹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 주요 쟁점

1) 권리 귀속

본 사안의 1차적 전제가 되는 쟁점은 권리 귀속이다. ‘벌새음악’이 주장하는 ‘저작권 일체가 회사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전제인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핵심이다. 실연자 측은 2007년 만 15세 미성년자 시점에 체결된 계약이며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하의 침해 주장은 모두 성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설령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권리가 분할 관리되는 구조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연자는 만 14세 때부터 CASH에 공중송신권을 위탁하여 왔다. CASH는 1977년 설립된 홍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 전 세계 80여 개 해외 단체와 협력하여 약 300만 명 이상의 권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규정상 공연권·방송권·온라인 전송권은 협회가 분리 관리한다. 따라서 ‘벌새음악’과의 계약상 양도 대상에 전송권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정허락 적용 여부

복제권 및 개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 항변은 중국 「저작권법」 제42조의 법정허락 규정이다. 동 조항은 음반제작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된 음악 작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녹음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벌새음악’은 2024년 1월 저작권 성명을 통해 사용 금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러

2) 중국 「저작권법」 제42조 “녹음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해서 제작한 음반상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이용을 불허한다고 밝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한 사후적 선언의 법적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31조³⁾가 사용금지 선언은 작품이 최초로 녹음물로 제작될 당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후에 발표된 금지 선언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한다. 실연자 측 역시 공증을 통해 일부 앨범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이 최초 녹음 당시 사용 금지로 명시된 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정허락은 무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단순 녹음 제작 목적일 것, 저작권자의 적시한 명시적 금지가 없을 것, 정당한 보수의 지급, 저작인격권 등 기타 권리의 비침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3) 법정허락의 효력 범위

법정허락이 적용되더라도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정허락의 효력은 복제권과 발행권⁴⁾에 한정되며, 전송권에는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녹음 행위 자체가 법정허락에 의해 적법하게 되더라도, ‘QQ뮤직(QQ音乐)’, ‘Apple Music’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유통에는 별도로 전송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앞서 검토한 CASH 위탁 구조가 중요한데,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이 처음부터 협회 관리 영역에 속하였다면 ‘벌새음악’의 침해 주장은 권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재녹음의 범위도 문제될 수 있다. 단순 재녹음에 해당한다면 법정허락이 적용되지만, 기존 곡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개작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므로 법정허락 항변 자체가 배척될 가능성이 있다. ‘벌새음악’은 전문기관의 비교 분석 결과 재녹음 곡이 원곡과 가사 표현, 선율 골격, 음향 미학, 녹음 기술, 믹싱 공간 구성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복제권 및 개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될수록 이는 오히려 해당 재녹음이 개작이 아닌 단순 복제 영역에 해당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법정허락 적용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양 주장의 정합성에 대한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사실 인정이 본 사안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본 사안은 아티스트가 재녹음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한 사례로, 미국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Taylor's Version’, 대만 밴드 ‘소다그린(苏打绿)’의 재녹음 사례에 이은 중국 내 유사 분쟁이다. 다만 본 사안은 중국 「저작권법」에 명문화된 법정허락 조항(제42조 제2항)을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중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31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40조 제3항 성명에 따라 해당 작품에 대해 녹음 제품을 제작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작품이 녹음 제품으로 합법적으로 녹음 시 성명해야 한다.”

4)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배포권에 해당함

본 사안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저작권 법제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일각에 따르면, 홍콩의 저작권 법제는 녹음물 자체를 독립적 작품으로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국 본토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권익 보호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실연자가 만 14세 시점에 CASH에 가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전송권을 음반제작자 귀속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미성년자 시점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 법정허락 대상이 되는 재녹음과 개작의 구별 기준, 전송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 위탁의 효력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mp.weixin.qq.com/s?__biz=MjM5NzU5ODEzNw==&mid=2665443275&idx=1&sn=fe2e6352442b11865dc15942a6ac7a64&scene=21&poc_token=HGwk32mj2MGzmOtuYhsoY14MyCdaDKyePiRV15_c
- https://mp.weixin.qq.com/s?__biz=MjM5NzU5ODEzNw==&mid=2665443162&idx=1&sn=df4b7d8b658e3bf65efd86c0db373fe7&scene=21&poc_token=HCYk32mjgLgeCL-Z5CdSnixQTpRrKLWmiALwmdJ3